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8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- 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8.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통제장치의 마련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2)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등 조항 신설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본 조례 개정안은

구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 사용에 따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
- 먼저,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으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단체로 마포구 체육회와 마포구 장애인 체육회를 명시하고 있는 바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르면 보조단체 상근 직원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.
- 또한, 보조금 용도의 제한과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4조를 신설(기존 제4조는 제5조로 이동)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물론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 또한 보조금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【참고자료】

〈국민체육진흥법〉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·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6. 2. 3.]

〈행안부 예규 제108호〉

(2) 보조금 지원 대상 (법 제17조, 제23조)

-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*되어 있고,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※ 단, ‘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’는 2016회계 연도부터 적용
-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*에 지원하는 경우
 - ※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 - ※ ‘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’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
- 시·도가 정책상 또는 시·군·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·군·구에 지원하는 경우